HILLSTATE

힐스 에비뉴 죽림더프라우드 A2BL 단지 내 상가(근린생활시설) 모집공고

현대건설

1 공급대상

■ 공급위치 및 규모 : 전라남도 여수시 죽림1지구 내 A2BL 단지 내 상가[근린생활시설 2개동 총 25개 호실]
■ 용도 : 힐스 에비뉴 죽림더프라우드 A2BL 아파트 단지 내 상가(근린생활시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 전남개발공사, 현대건설(주), ㈜길축산업개발 / 현대건설(주), ㈜길축산업개발
■ 공급면적 및 공급예정 가격(최저 입찰 예정가격)

1) 호실 별 공급 예정 가격 (단위 : ㎡, 천원, VAT 별도)

구분	층	호수	면적				공급 예정 가격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대지비	건축비	합계
A동	지상 1층	101	52.0800	9.8703	61.9503	38.6006	79,260	320,950	400,210
		102	50.4000	9.5519	59.9519	37.3554	75,170	304,390	379,560
		103	50.4000	9.5519	59.9519	37.3554	75,170	304,390	379,560
		104	50.4000	9.5519	59.9519	37.3554	75,170	304,390	379,560
		105	50.4000	9.5519	59.9519	37.3554	74,400	301,260	375,660
		106	50.4000	9.5519	59.9519	37.3554	74,400	301,260	375,660
		107	45.4156	8.6072	54.0228	33.6611	68,420	277,080	345,500
		108	46.8300	8.8753	55.7053	34.7094	70,550	285,680	356,230
		109	46.8300	8.8753	55.7053	34.7094	72,000	291,560	363,560
	지상 2층	201	43.2450	8.1959	51.4409	32.0523	64,200	137,450	201,650
		202	41.8500	7.9315	49.7815	31.0183	62,110	132,990	195,100
		203	41.8500	7.9315	49.7815	31.0183	62,770	134,390	197,160
		204	41.8500	7.9315	49.7815	31.0183	62,770	134,390	197,160
		205	41.8500	7.9315	49.7815	31.0183	63,400	135,730	199,130
		206	41.8500	7.9315	49.7815	31.0183	63,400	135,730	199,130
B동	지상 1층	101	42.0000	3.1415	45.1415	30.6972	63,310	259,370	322,680
		102	42.0000	3.1415	45.1415	30.6972	62,060	254,220	316,280
		103	42.0000	3.1415	45.1415	30.6972	62,060	254,220	316,280
		104	42.0000	3.1415	45.1415	30.6972	62,060	254,220	316,280
		105	42.0000	3.1415	45.1415	30.6972	61,420	251,610	313,030
		106	42.0000	3.1415	45.1415	30.6972	62,060	254,220	316,280
		107	36.9696	2.7652	39.7348	27.0205	54,610	223,720	278,330
		108	42.0000	3.1415	45.1415	30.6972	62,060	254,220	316,280
		109	42.0000	3.1415	45.1415	30.6972	61,420	251,610	313,030
		110	42.0000	3.1415	45.1415	30.6972	62,670	256,760	319,430

2) 군 별 공급 예정 가격 (단위 : ㎡, 천원, VAT 별도)

구분	군별	층	호수	면적				공급 예정 가격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대지비	건축비	합계
A동	1군	지상 1층	101	52.0800	9.8703	61.9503	38.6006	154,430	625,340	779,770
			102	50.4000	9.5519	59.9519	37.3554			
	2군		108	46.8300	8.8753	55.7053	34.7094	142,550	577,240	719,790
			109	46.8300	8.8753	55.7053	34.7094			
	3군	지상 2층	203	41.8500	7.9315	49.7815	31.0183	125,540	268,780	394,320
			204	41.8500	7.9315	49.7815	31.0183			
	4군		205	41.8500	7.9315	49.7815	31.0183	126,800	271,460	398,260
			206	41.8500	7.9315	49.7815	31.0183			
B동	5군	지상 1층	101	42.0000	3.1415	45.1415	30.6972	125,370	513,590	638,960
			102	42.0000	3.1415	45.1415	30.6972			
	6군		109	42.0000	3.1415	45.1415	30.6972	124,090	508,370	632,460
			110	42.0000	3.1415	45.1415	30.6972			

■ 공통사항
1) 상기 예정가격은 토지부분과 건물부분(VAT별도)의 합계금액이며, 계약금액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므로 입찰 후 낙찰가격에 대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구분하여 건물부분에 부가가치세액(건물가격의 10%)을 낙찰가격에 더하여 계약체결합니다.
2) 근린생활시설의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기둥이 있는 호실의 전용면적에는 기둥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3)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연면적 비율에 따라 분할되었으며, 상기 호실별 대지지분은 근린생활시설의 총 대지지분을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또한,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 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4) 상기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상기 공급면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의 증감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아니합니다.
5) 상기 예정가격은 각 호실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가격임.
6)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7) 잔금은 입점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하며, 입점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점할 경우는 입점 전까지 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 호실별 시설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1)

시설용도		권장 용도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료기기 등의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000㎡ 미만) - 휴게음식점·제과점 등(300㎡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 의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500㎡ 미만) 등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500㎡ 미만), 종교집회장(500㎡ 미만) - 사진관, 표구점, 일반음식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등 - 휴게음식점·제과점(300㎡ 이상)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500㎡ 미만) - 독서실, 기원 /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놀이형시설 (500㎡ 미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단, 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은 제외. '다중생활시설'이라 함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

※ 해당 시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법정 허용 면적을 초과한 경우 향후 건축물대장에 타 용도로 분류될 수 있음.
※ 상기 단지 내 상가(근린생활시설)는 건축법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시한 것임.
※ 업종별 면적 제한은 단지 내 상가 (근린생활시설) 계약 전에 필히 확인 바람.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동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다음 표의 시설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됨.

1. 일반게임제공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청소년보호법령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아니한 업소는 허용됨.
3. 사행행위영업 4.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5. 비디오물감상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실 6. 노래연습장 7. 무도학원 및 무도장
8.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9.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10.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11.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
12. 기타 청소년보호법령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되어 있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시설

※ 상기 업종은 예시에 불과하며, 입점 업종에 대한 관할 관청의 인·허가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 본인이 직접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 방법

■ 입찰참가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인, 외국국적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입찰 참가 신청 접수자에 한해 입찰참여 가능
- 신청범위
  ① 응찰자 1인이 신청할 수 있는 군 수 또는 호실 수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 군 또는 호실에 동일인이 중복 신청할 수 없음
  ②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법인으로 간주

■ 공급방법 : 공개 군별 또는 호실별 경쟁입찰(1순위 : 군 별 입찰, 2순위 : 호실 별 입찰)

■ 입찰일정 구비사항

구분	입찰			계약기간	장소
	입찰 보증금 납부	신청접수	개찰		
일정	2025.05.27(화) 10:00부터 ~2025.05.28(수) 12:00까지	2025.05.28(수) 10:00부터 ~ 13:00까지(입찰마감)	2025.05.28(수) 입찰 마감 후 즉시	2025.05.28 낙찰자 발표 후 2025.05.28 18시 까지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모델하우스 (여수시 웅천동 1802-3)
구비사항	○ 입찰보증금 - 1개 군 별 일금 이천만원 (20,000,000) - 1개 호실 별 일금 일천만원 (10,000,000) - 지정은행 납부계좌로 입금 [광주은행 : 1127-020-320936 (전남개발공사)] ※ 현장 수납은 불가하며,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입금자와 응찰자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입찰 신청서(사업주체 소정 양식) - 입찰보증금 납부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 사업자 등록증(법인 및 사업자) - 보증금 환불 통장 사본 (응찰자 본인 명의 통장) - 대리인 : 가. 위임장(응찰자의 인감증명서) 나.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 군 별 응찰자를 우선으로 선정 -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응찰자를 우선으로 선정		

※ 입찰일 12:00시 이전 입금된 입찰보증금만 유효하며, 12:00시 이후 입찰장에 입장할 수 없음
※ 상기 증명서류는 입찰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 입찰참가 방법

순번	입찰참가 절차	
1	입찰장 입장	입찰 보증금 납부 확인서 확인
2	입찰 신청서 작성	사업주체 소정 양식 제공
3	구비서류 검수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도장 등
4	입찰 참여	입찰함에 입찰 신청서 투찰
5	개찰	군 별 응찰자를 우선(1순위 : 군 별, 2순위 : 호실별) / 최고가 응찰자를 우선
6	낙찰자 발표	모델하우스 공개 공지(최고 낙찰가 공개)

■ 입찰방법
- 입찰방식은 군 별 입찰, 호실 별 입찰로 나뉘며, 군 별 입찰이 있는 경우 군 별 입찰을 우선합니다(1순위 : 군 별, 2순위 : 호실 별)
- 입찰 보증금은 군 별 및 호실 별 입찰 시 상이하니 상기 입찰일정 및 구비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희망 각 군 또는 각 호실을 지정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한 각 군 또는 각 호실 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입찰 참여해야 합니다.
- 입찰금액은 군 별 또는 호실 별 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총액이 아닌 평당가격 기재는 무효 처리 됩니다.
- 입찰금액은 최저 입찰기준가 이상으로 십만원 단위까지만 기재해야 하며, 십만원 단위 미만 금액 기재시 십만단위 미만은 절사한 금액을 입찰가로 하기로 합니다.
- 입찰금액은 한글 기재 금액과 아라비아 숫자 기재 금액이 동일해야 하며, 상이할 경우 한글 기재 금액을 우선으로 합니다.
- 입찰은 해당 시간까지 입찰서류를 입찰봉투에 넣은 후 지정된 입찰함에 투찰하여야 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개찰 전, 후를 불문하고 취소, 교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입찰희망 금액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고가 입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은 전적으로 입찰자 책임이오니, 입찰금액 결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입 및 환불

구분	입찰 보증금	납부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군 별	- 군 별 이천만원(20,000,000)	광주은행	1127-020-320936	전남개발공사
호실 별	- 호실 별 일천만원(10,000,000)			

- 입찰 보증금은 군 별 이천만원(20,000,000), 호실 별 일천만원(10,000,000)으로 입찰 보증금 납부 일정 마감 전까지 사업주체가 지정한 납부 계좌에 전액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 보증금은 현장에서 별도로 수납하지 않으며, 입금자와 입찰자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한 계좌 이외의 입찰 보증금의 입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대금의 일부로 대체 합니다.
- 낙첨자의 입찰 보증금에 대한 환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 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법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법인)이 기재한 반환계좌 번호의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을 과오납한 경우라도 즉시 반환되지 않으며,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보증금은 반환 기간 내에 반환처리 됩니다.
- 입찰보증금에 대한 신청자가 아닌 제3자로의 반환(채권양도)은 불가 합니다.
- 낙첨자의 입찰 보증금은 낙찰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 환불 처리 됩니다.
- 입금예시 (A2BL A동 101호 입찰자 → 2BLA101홍길동), (A2BL B동 101호 입찰자 → 2BLB101홍길동), (A2BL1군 입찰자 →2BL1군 홍길동)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입찰의 무효
- 동일인이 동일 군 또는 호실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사업주체에 귀속 됩니다.
- 사업주체의 예정가격 미만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사업주체에 귀속 됩니다.
- 낙찰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은 사업주체에 귀속 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자가 선정되는 경우 입찰 보증금 및 계약금은 사업주체의 귀속 됩니다.

■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은 군 별 입찰이 호실 별 입찰보다 우선하며, "군 별 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될 경우 "호실 별 입찰"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사업주체의 예정가격 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최고 응찰금액이 2인 이상 같을 경우 즉시 동 응찰자를 대상자로 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기로 합니다.)
-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응찰금액이 사업주체의 예정가격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유찰 또는 낙찰 무효 시 현장에서 즉시 재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기로 합니다.
- 차점자 및 경쟁률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입찰서는 제출 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사업주체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입찰 참가자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사업주체에 귀속 됩니다.
- 낙찰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무효 또는 계약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 참여자는 모집공고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계약 및 분양대금 납부 안내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낙찰자는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 계약금을 낙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낙찰자의 입찰 보증금은 계약금으로 전환되며, 부족한 금액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기간 : 2025.05.28(수) 낙찰자 발표부터 ~ 18:00까지
- 장 소 :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모델하우스(여수시 웅천동 1802-3)
-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공통	- 입찰보증금 및 계약금 이체확인증 - 수입인지증명서(인지세)
개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각 1부. - 대표자 신분증 및 법인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도장).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상기구비서류는 모집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본인 발급분 기준)
※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자 전원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수입인지(인지세)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후 사본 제출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시 35만원
-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분양대금 납부비율 및 납부기한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기한	계약체결 시	2025.08.25	입점예정일(2027.04 예정)
납부금액	10%	10%	80%

- 낙찰자의 입찰 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고,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가산되어 계약금액이 확정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대출 등 융자알선은 없으며, 낙찰자는 자력으로 분양대금액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잔금납부기한(미리 납부 시 납부일) 이후에 발생되는 제세공과금(관리비 포함)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잔금납부기한 및 입점지정기간은 추후 개별 통보 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납기일 이후에 하였을 경우 그 지연일수에 연체요율(연체기간 구분없이 년 7.51%의 연체요율 적용)을 적용한 연체금을 징수합니다.
- 분양대금 및 연체대금 미납 시 입점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구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납부계좌	광주은행	9624-0100-25842	전남개발공사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계약 체결 시 호실 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분양대금의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광주은행, 1127-020-320942, 예금주 : 전남개발공사)로 관리합니다.
※ 상기 계좌 이외에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선납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계약 시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A2BL A동 101호 계약자 → "2BLA101홍길동", A2BL B동 101호 계약자 → "2BLB101홍길동", A2BL1군 계약자 → "2BL1군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입점예정일 : 2027년 04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 실 입점일이 입점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은 실 입점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점여부와 관계없이 입점지정일 이후의 상가관리는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관리 합니다.
- 입점지정일은 공정 및 (가칭)우리초등학교 개교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 자연재해나(장마, 폭우, 폭설 등), 전염병 발생, 전쟁, 내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현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2027년 9월 (가칭)우리초 개교 예정이나, 관련 기관의 계획 변경에 따라 개교일정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본 단지 내 상가(근린생활시설)의 입점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법인·단체 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 됩니다.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관련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점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하게(사업주체 50% / 계약자 50%) 납부하여 합니다.(전매 시 양도인, 양수인이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신청자는 모집공고, 점포용도, 계약조건, 기타 유의사항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신청 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형별 면적(㎡) × 0.3025)
- 공부상 면적의 증감은 ㎡당 공급가에 의하여 정산처리 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변동은 정산 생략)
- 건축물의 이미지 또는 홍보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반드시 도면 또는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은 분양자료(안내자료 등) 및 열람 도면으로 대체하며, 계약자는 분양계획 및 유의사항, 현장 여건, 주변 개발계획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이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건축물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열람 도면을 참고하시거나 상담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될 수 있으니, 입점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입찰 및 계약하여야 한다. • 본 근린생활시설 입점자모집공고(분양광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또는 홍보관)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한다. • 각종 분양자료(CG, 모형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건축허가도면 및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현장 방문 또는 충분한 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건축물 관련 도면은 모델하우스에 비치되고 있으며 입찰 및 계약 전 확인할 사항은 반드시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는 그 책임이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물은 동선, 성능 개선 및 대관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호실의 시설기준은 공급회사에서 사용검사받은 상태대로 인수하여야 하며, 영업 및 인·허가에 부가되는 시설(진열대, 간판, 상·하수도, 가스배관, 전기, 냉난방등 추가되는 시설(실외기포함 개별설치분)은 입점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업 주체의 철거 요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므로 관련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급수밸브, 바닥배수구, 가스 공급밸브 등의 위치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하여야 하며, 추후 입점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합니다. • 실외기는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지정된 위치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에어컨 실외기 외부설치와 관련한 소음 등의 민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민원해결은 입점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분양된 호실에 관한 제반사항은(영업허가, 용도변경, 호실관리, 등록 등의 기타 인가) 공급 받는 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일체의 업종보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입점 시 및 입점 후 업종중복에 대해서는 계약자 상호간의 협의로 처리하기로 하며 사업주체와는 일체 무관합니다.
- 학원, 교습소 등을 개업하고자 하는 분은 관할 교육청에서 최소면적, 용도 등의 등록, 인가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으로 개업하고자 하는 분은 관할 교육청 및 관할 경찰서에서 학교보건법 및 풍속영업의 규정에 관한 법률의 저촉여부 및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른 정화구역 내 설치 불가 업종 등의 확인은 수분양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 공급받는 자는 입점지정 최초일까지 상가의 영업 및 제반관리에 필요한 조직(상가번영회 자치관리기구)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은 입점 후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결성하여 수분양자가 책임지고 관리 운영키로 합니다. • 상가 후면 상부로 도시가스 배관이 노출되어 지나가며, 상가 천정 내부에 타 호실 및 상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 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공용부분 발생되는 급수, 전기요금등은 상가번영회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시어 각 호실별 요금 분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 통신, 맨홀, 소화전 등의 위치 및 오수배관의 위치는 시공시 변동 될 수 있으며 각 호실의 지정된 위치에 설치된 가스/수도배관의 계량기 및 이후 필요위치까지의 연장 배관 설치는 입점자 설치분으로 공사하여야 하오니 관련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실에 인입되는 분전반 전원은 3상(380V) / 콘센트는 단상(220V) 정육점, 슈퍼마켓, 세탁소 등 대용량의 3상(380V)전원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상가 분양자 또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전기용량 증설 및 변경하여 3상(380V)전원을 사용해야함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입점자)는 입점과 동시에 호실별 전기계량기 명의를 입점자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입점지정 최초일부터 상가에 대한 제반관리는 상가번영회 자치관리기구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가 전체의 전력합산 용량이 75kW 이상이므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소방시설법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시행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 호실별로 지정된 용도(상가:근린생활시설)의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입점시 및 입점 후의 업종 중복에 대해서는 입점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가칭)우리초등학교 개교일정은 전라남도교육청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전염병 발생, 전쟁, 내란, 공부미정리,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입점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정확한 입점 시기는 입점 약 1~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현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2027년 9월 (가칭)우리초 개교 예정이나, 관련 기관의 계획 변경에 따라 개교일정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본 단지 내 상가의 입점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잔금 완납 시 또는 입점 지정 기간 말일 익일부터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계약자는 당 상가의 미분양이 발생할 시에 미분양 호실에 대한 가격, 납부조건 및 lay-out과 용도를 사업 주체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잔금 납부 이전이라도 입점 지정 마감일 이후 발생되는 공과금 및 전기세 등의 납부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 명의변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구조변경 및 증개축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관할 지자체에 사전 허가 또는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라며, 불법 개조 및 증축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팜플렛 등의 제반도면·이미지,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설계변경사항(색채/외부마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가에 대한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하며, 관련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계약자 본인은 임대 사업자 등록시 사업주체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 사실에 대한 미 통보 및 사업자 미등록, 부가세 미신고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하여 계약자 본인은 관련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아파트 단지내 시설 이외에 외부시설의 변경 등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가 인근 조경의 경우 사업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되며 사업승인 도면상의 시설물 또는 조경수목이 상가의 영업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하여 이전 또는 철거,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니 관련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변경에 따른 부속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및 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며, 건물명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상가 호실의 용도변경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안에서만 가능하며, 해당 시·구청에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당사에서 직접 알선해드리는 융자는 없으며, 계약자는 자력으로 분양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자의 승인하에 권리의무승계가 가능합니다. 단, 잔금납부가 완료되거나 대금 연체시에는 불가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 분양계약자도 거래신고의 대상임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과태료 등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전에는 권리·의무의 승계가 제한되므로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정가격 및 확정된 분양금액에는 각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체결 시점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수입인지 사이트 :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하게(사업주체 50% / 계약자 50%) 납부하여 합니다.(전매 시 양도인, 양수인이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인지세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등기와 무관하게 중간 분양권 전매(최초 분양계약자와 소유권이전등기 시 최종 매수자까지)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상가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해당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지침에 따라 당사가 해당 지자체에 제출 예정인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 설치 전에 해당 지자체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승인 후 설치되어야 합니다. 승인 내용 위반 및 입점자 상호간의 분쟁에 사업주체는 책임이 없고 관여하지 않으며, 임의로 철거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철거에 따른 제반 비용은 위반한 자에게 후 청구 하기로 합니다. • 신청자는 본 모집공고, 팜플렛, 호실용도, 유의사항 등 기타 입찰 공급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신청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상가 외부조성 레벨에 따라 호실내부 진입 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 등의 복리증진 및 단지여건에 따라 단지의 진입로 및 울타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상가 주변 일부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문주, 안전변압기, 계단, 안내표지판, 화단, 옹벽, 쓰레기분리수거함, 가감차선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상가 주변 도로(보행로 등)에 식재되는 가로수 및 공공 시설물을 상가의 영업을 위하여 함부로 훼손할 수 없으며, 신청전 이를 확인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하자처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에 따라 진행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관련 별표4 등 참조)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시설별 전용면적 비율에 의해 대지지분이 분할되어 있으나 대지가 별도 구획된 것은 아니므로 상호간에 임의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 공부정리가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세대별 대지지분 안분 후 합계 아파트 대지면적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잔여 아파트 대지면적은 근린생활시설 대지지분 포함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점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단, 대지면적은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부 일조, 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과 인접세대 소음, 빛공해, 인접주 동디자인에 의한 눈부심, 사생활권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 철도,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빛공해,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제연FAN, 우수조, 송풍기, 근린생활시설의 배기시설,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실외기 및 주방배기구 인접으로 인한 소음, 진동, 냄새 및 해충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변 건축물 신축, 단지 남측 근린공원 내 공용시설물, 옹벽·석축, 단지 내 휴게공간·필로티·어린이놀이터·드라이에어 리어(D/A)·채광창(Top Light),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소음발생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계획 상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소음 발생,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높이는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인·허가(변경포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점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입점 후 단지 주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 향과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계약 시 이를 염두에 두고 계약하며 본 근린생활시설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동 배치계획 상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계약대상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층간, 호실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와 인접동의 입주자들로부터 상가 영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가영업과 관련한 민원은 입점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호실이 속한 동 및 층, 향, 세대에 따라 일조 및 조망, 채광, 통풍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내부에는 전용면적에 기둥 및 구조벽체 등으로 인한 실사용면적이 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출입구로부터 위치, 거리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호실별로 내부에 내력벽(골조)이 존재할 수 있으니 평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 일부 호실 사이에는 경량 칸막이로 시공됩니다. 내력벽 구조 변경은 불가하며, 내부 구조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건축, 전기, 설비 공사 등은 수분양자/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호실별 평면이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호별 평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의 개별 점포 내부 마감은 기본 마감으로 시공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각 점포의 천장고는 인도의 경사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천장/바닥 마감재는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상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위치하여 차도와 인도의 경계 일부에 어린이 보호펜스가 설치될 수 있으며, 향후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부 칸막이의 변경 및 그에 따른 건축, 전기, 설비 등 해당하는 모든 공사는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용승인 이전에는 점포 내부 및 외부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경량벽체 또는 조적벽체로 시공된 점포간 벽의 경우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개인별로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며, 경량벽체에 부착물 설치 시에는 경량 벽체용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각 실의 구획칸막이와 지정페인트 벽면마감, 경량천정+텍스 천정마감, 지정타일 바닥마감은 시공사가 시공하며, 이 외의 내부 인테리어, 내부 칸막이 등 추가적인 일체의 마감작업은 계약자가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설계 변경을 요할 경우에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변의 유휴 공간, 복도 및 일부 창고 등은 점포별 전용 공간이 아닌 공용 공간이며, 관계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향후 유휴 공간의 활용은 수분양자 간의 협의 및 상가관리사무소 또는 상가번영회 자치관리기구 등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 추후 부지의 확정 측량 시 일부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를 사전인지 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또한 상가 호실당 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 외부시설물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대지의 확정 측량 또는 경미한 시공변경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점 시 일부 화장실에 인접한 점포의 경우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와 면해 있는 화장실은 겨울철 동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가자치관리위원회 등에서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운영을 해야하며, 관리/운영의 부족 등으로 동파 발생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상가자치관리위원회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사업승인도서 이외의 진입로 및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의 추가·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점포 내부에 돌출 기둥이 계획될 수 있으니 수분양자는 계약 전에 기둥의 위치와 크기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계약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내부 기둥 및 벽체 등의 벽체공유면적은 계약면적에 포함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내부에는 전용면적에 기둥 및 구조벽체 등으로 인한 실사용 면적이 호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과 출입구로부터 위치, 거리 등 종합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양가액을 책정하였기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외부창호도 벽체의 중심으로 면적 산정되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분양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 또는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설계변경의 경우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수분양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하며, 해당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일부 점포는 외부구조물(공동주택 문주 등) 등으로 인하여 간판 설치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향후 경관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실은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점 후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 주변에 각종 시설물의 배치로 인하여 옥외광고물 설치 및 점포 운영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시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근린생활시설의 호수명칭 표기는 향후 준공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별로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까지의 거리가 상이하고 단지 외부를 통해 보행이 가능한 것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주차구획은 호실별 별도 구획이 되지 아니 하므로 상가번영회 자치관리기구에서 제반관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1,2층 상가 복도는 외부공간입니다. • 주차장 이용은 공동주택의 문주 및 게이트를 통해 진/출입 관리가 이루어지며, 공동주택의 Drop-off Zone을 회차하여 주차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집적소 공간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추후 점포별 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사항은 상가번영회 자치관리기구를 통해 지자체와 허가 등을 협의하여 보행간섭, 공동주택의 프라이버시 및 악취 등이 없도록 운영해야합니다. • 아파트 단지 내 시설 이외에 단지 외부의 개발계획, 교통계획, 기반시설설치 등은 공급자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므로 외부시설의 변경 등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가 급수배관, 배수드레인 각 호실별 1개소 적용 됩니다. • 주 출입구 전면 장애인협회 협의 후 장애인 점자블럭과 트렌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배수관의 일부가 PVC관으로 시공되어 있어 온수를 배출할 시에 배수관의 변형이 발생될 수 있으며 배수관의 변형,파손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수관 관경을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용량 부족에 따른 관경 변경 혹은 추가시공분은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이로 인한 분쟁은 "갑" 및 "시공자"와는 무관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24시간개방) 등의 개설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외부인 통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계단 및 램프 안전난간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입점 시 천장 내부에 공용배관 및 덕트, 상부실 배관 등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발생 및 유지보수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철거 및 이동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제연과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확인하신 후 청약 접수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기반시설인 한전패드스위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 개소 등 세부계획은 관련기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또한 한전패드 스위치와 인접한 일부 점포는 조망, 미관저해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한다. • 호실별 설계된 전기용량 이외의 전기용량 증설 및 변경은 상가 분양자 또는 임차인이 부담 하여야 하며, 외부 및 내부 간판 전원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호실별 분전반에서 간판까지 배관, 배선하여 설치 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내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통신단자함, 전기분전반의 타입과 위치, 수량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벽체,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은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상가 출입문은 단열성능 확보를 위하여 내, 외부 중 1방향으로만 열리는 도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 설치 위치는 지붕층에 지정된 위치이며 실외기 설치위치와 인접한 호실의 경우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쓰레기집하장/기계실/제연FAN/우수조/송풍기 등이 설치되고,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진동,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한다.상기 사항 미확인에 대한 계약체결 사항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비에 의해 소음, 진동 및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일부 매장의 경우 공용 메인 배관(수도, 냉난방, 소화, 위생, 가스 등)이 천정 내 시공될 수 있으며,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천장 내부에 상부실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실내 점검구 및 공용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량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리를 위한 주방이 입점 시에는 해당 소방법규에 맞춰 별도의 연기배출시설과 덕트공사를 입점자 공사분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점포별 주방 설치에 따른 연기배출시설 및 덕트공사 시에는 인접한 세대에 소음 전달 및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 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배수용 배관이 설치되며, 별도의 배수구는 설치되지 않고 배관 노출 설치로 일부 공간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이동 설치 등은 입점자 공사분입니다. • 식당업체는 반드시 그리스트랩을 설치하여 배수막힘 현상을 방지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입점자에게 있습니다.
- 각 호실에는 화재 시 필요한 소방 설비로 인해 점포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점포내 냉 난방을 위한 냉매배관 및 장비가 미설치되며, 지정된 실외기 위치까지 연장 배관 공사는 입점자 공사분으로 해야합니다. 점포별 냉난방기 길이가 상이하여 효율이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 점포내 환기를 위한 환기덕트 등은 미설치되며, 입점 시설 및 용도에 따라 추가 환기 장비 및 설비 등은 입점자가 직접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위치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프라이버시 및 소음/냄새 등에 피해가 없는 위치(근린생활시설 측면/배면 설치 불가)에 설치해야 합니다. • 전기, 통신, 소방설비 등 시설물이 공사 계획에 따라 수량 및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고물(간판) 설치 및 전원 공사는 입점자 부담입니다. • 호실 천장내부에 공용배관 및 덕트, 상부실 배관 등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이 설치되어 소음발생 및 유지보수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철거 및 이동할 수 없습니다.
- 상가 후면 단지 전력 인입 PAD 및 기타 장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경우, 엘리베이터에 면하거나 인접한 호실은 엘리베이터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길이, 높이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을(법적 기준 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한다. •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통신단자함, 전기분전함 등 전기/통신/소방설비 시설물의 타입과 위치, 수량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입구와 인접한 호실의 경우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시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해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다. •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의 위치에 따라 일부 호실은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 복도 및 공용공간에는 소방시설물(수신기, 발신기, 전원반 등)이 설치된 예정으로 입점자는 이에 대한 관련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램프 진출입로에 설치되는 출차경광등은 최소 50dB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관리사무소, MDF실 등은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공간을 공동 사용하여 배관 및 배선이 노출될 수 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부구조물(지붕/난간/벽 등)으로 연결되는 공동주택의 주동/문주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마감(벽면/난간/옥상데크 등)의 파손/낙서에 대해서는 상가번영회 자치관리기구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해야합니다. • 단지 외부에 설치되는 횡단보도/신호등/무단횡단방지용난간/가로수 등의 위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며, 이로 인한 점포별 접근성 부족 등에 대해서는 변경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해당 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위치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사용승인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점 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입점 이후 '수분양자(입점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점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점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점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지에 포함 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점지정일(사전방문 등)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상가의 조감도, 배치도, 단지배치도, 평면도 및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수분양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사업승인도서 및 실제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며, 이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 전면/측면/후면의 외부공간 레벨(경사로/계단 등)은 시공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점포의 층고, 천장고, 창호(출입문 포함)의 크기, 레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기존 2개 이상의 점포를 1개 점포로 구성 시, 기 시공 칸막이 벽체 철거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바닥면 높이는 인접 점포와 상이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상 표현된 단지명 및 BI/CI는 실 시공시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개소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제작된 단지모형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담장 및 부속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시설배치 면적과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의 설계사항은 동등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 내 관련사항
    -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문주, 아파트 단지명,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외부색상, 명칭, 경관조명
    -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수공간,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바닥 포장, D/A(환기구), 배기관, 옥외 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2.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철도, 도로, 공원, 보행로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 시설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계획레벨(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판매시설 등)에 따라 실 시공시 단지레벨 및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시공범위 외 기반시설의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침에 따라 A2BL에는 공공보행통로, A4BL 보행통로가 설치되며, 지침 제9조 5항/6항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며, 24시간 개방된 통로로 이와 인접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 공사 중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전염병 발생, 전쟁, 내란, 정부의 정책, 기타도시개발사업 미준공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점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이 경우 입점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단지는 실입점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호실별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대지면적 및 대지지분은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점 후 불법 구조 변경 시(해당 시점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무허가 증축이 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 본 분양물건 계약면적 외의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정식 상가번영회 자치관리기구 결성 이전에 형성된 입점자 모임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입점자는 개인적으로 또는 임의로 형성된 입점자 모임을 통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 및 그 관계자에게 공급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요청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 타인 명의로 사실상 양도받아 입찰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수분양자는 공급공고, 팜플렛 및 유의사항을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분양)계약서에 따릅니다. (163) 단지명, 단지내 시설명칭, 동호수의 표기, 단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지자체 승인 관련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남개발공사, 현대건설㈜, ㈜길축산업개발은(이하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 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hillstate.co.kr)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전남개발공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길축산업개발	현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길축산업개발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전라남도 목포시 후광대로 134, 8층 제805호(옥암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전라남도 목포시 후광대로 134, 8층 제805호(옥암동)
법인등록번호	204171-0001423	110111-0007909	201111-0061301	110111-0007909	201111-0061301

■ 분양사무실(모델하우스) 위치 :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모델하우스(여수시 웅천동 1802-3)
■ 문의전화 : ☎1551-4788

※ 본 공고에 기재된 내용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련 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 합니다.)

1551-4788 시행 전남개발공사 현대건설 길축산업개발 시공 현대건설 길축산업개발